



제6장에 따른 권리 공지

귀넷 카운티 정부는 교통부 (귀넷 DOT) 를 통해 그 정책이 1964 공민권(Civil Rights Act) 제6장(Title VI) 및 모든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전적으로 준수함을 공표합니다. 귀넷 카운티는 1964 공민권 제6장, 1973 연방 보조 고속도로법 (Federal-Aid Highway Act), 1973 재활법 (Rehabilitation Act), 1975 연령차별금지법 (Age Discrimination Act) 및 1987 공민권 회복법 (Civil Rights Restoration Act) 에 따라 그 누구도 인종, 피부색, 성별, 국적, 장애, 나이를 이유로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여가 제외되거나, 그 혜택이 거부되거나, 기타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제6장에 따라서 불법적인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귀넷 교통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은 차별적인 행위의 발생일로부터 달력상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귀넷 교통부 제6장 조정자 (Coordinator) 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제6장 조정자의 사무실(전화: (770) 822-7400) 로 전화하여 무료로 제6장 민원 양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